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8회 충청북도의회
임시회

(제1차 교육위원회)

2023. 4. 20.(목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3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4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 내용과 수탁기관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을 보완하고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신설 (안 제4조의2)
- 수탁기관 계약의 이행 보증 내용 신설 (안 제11조제2항)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제정이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

규정하고, 수탁기관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의무를 신설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3항에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에 따라,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서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.

<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>

-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-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④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- 이에 따라,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운영, 여학생 가정형 위(Wee)센터와 남학생 가정형 위(Wee)센터 운영, 그리고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등 4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는 6억 7,583만 원에 이르고 있음.

【첨부자료 1】

2023년 민간위탁사업 현황

(단위: 천원)

순	부서명	사업명	계약자	위탁기간	2023.사업비	비고
1	인성 시민과	학교협동조합운영	충북사회적경제센터	'22. 1. 1.~ '24.12.31.	30,000	
2	인성 시민과	여학생 가정형 위(Wee)센터운영	사단법인 유스투게더	'23. 1. 1.~ '24.12.31.	278,730	
3	인성 시민과	남학생 가정형 위(Wee)센터운영	사단법인 유스투게더	'22. 1. 1.~ '24.12.31.	267,106	
4	괴산증평교육지원청	괴산 마을교육공동체	행복교육 괴산어울림	'23. 1. 1.~ '23.12.31.	100,000	
합 계 (4건)					675,836	

-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¹⁾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,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.
- 특히, 본 조례개정안에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
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<신설>

제4조의2(민간위탁 동의안)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3. 위탁사무의 내용
4. 위탁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7.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8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1) 대법원 2011. 2. 10., 선고, 2010추11, 판결

- 또한, 제11조제2항으로‘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’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계약 이행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 마련으로 판단됨.
- 행정의 다양화·전문화에 따라 민간위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위탁의 공정성, 투명성,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을 강화하여 도민의 교육행정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수탁기관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 의무를 신설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 과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에 부합하며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